|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서부 대개발전략** **심층실시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12호《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서부 대개발전략 심층 실시 관련 세수정책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1] 58호) 규정에 근거하여 서부 대개발전략 심층 실시 관련 기업소득세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부지역에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에서 규정된 산업목록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해당연도의 주요사업 수입이 기업 수입총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신청과 주관세무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친 후 15%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칭하는 수입총액은 《기업소득세법》제6조에서 규정한 수입총액을 뜻한다. 2. 기업은 연도정산 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서면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차년도는 주관세무기관에 심사확인을 보고하고, 제2차년도 및 그 이후에는 연간 비안관리를 시행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중앙직속 중점개발도시 세무기관은 현지 상황과 결부시켜 구체적인 심사, 비안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세무총국(소득세사)에 비안한다. 기업의 주요사업이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성급(부성급 포함)정부 유관 행정주관부문 또는 그 권한을 부여한 하급 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증명문건을 제공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기업의 주요사업이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15%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예납할 수 있다. 연도정산 시, 해당연도 주요사업 수입이 기업 총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된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에 따라 산정하여 보고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3.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발표 전, 기업이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05년판)》,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2011년판)》,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07년 수정)》 및 《중서부지역 우세산업목록(2008년 수정)》범위에 부합되는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친 후, 그 기업소득세는 15% 세율에 따라 납입할 수 있다.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발표 후, 이미 15%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 정산을 진행한 기업이 본 공고의 제1조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관련절차를 이행한 후에 세법에서 규정한 적용세율에 따라 재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4.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설립된 교통, 전력, 수리공사, 우편, 방송통신기업이 이미 《국가세무총국 서부 대개발 이행 관련 유관 세수정책의 구체적 실시의견에 대한 통지》(국세발[2002] 47호) 제2조 제2관 규정에 따라 이미 세무기관 심사비준을 취득한 경우, 만기까지 기업소득세의“양면삼감반(两免三减半, 외상투자기업이 이익발생연도로부터 기업소득세에 대하여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해주는 세금혜택혜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서부 대개발 세수혜택혜택 조건에 부합되지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익실현연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2010년 12월 31일 전에 국세발(2002) 47호 제2조 제2관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 심사 승인 수속을 완료하지 못은 경우, 본 공고의 규정에 근거, 유관 수속을 이행한 후 기존의 세수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집행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9] 69호）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따라, 기업이 서부 대개발의 15% 혜택세율 조건에 부합하고,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국무원이 규정한 각 항목의 세수혜택조건에 부합할 경우,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50% 세금 감면하는 기간 내에 기업적용세율에 따라 산정한 납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혜택지역 내외에 각각 기구가 설치 되어 있는 기업이 받는 서부대개발 혜택세율 문제 (1) 서부 대개발 세수혜택 지역에 총기구를 설립한 기업은 혜택지역에 설치한 총기구 및 분지기구(혜택지역 이외에 설립한 2급(二级)분지기구가 혜택지역 내 설립한 3급 이하 분지기구는 불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15% 혜택세율 적용을 확정한다. 해당 기업이 혜택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확정될 때, 해당 기업이 혜택지역에 설치한 총기구 및 분지기구의 주요사업이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및 그 주요사업에 대한 수입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확정한다. 해당 기업이 혜택지역 이외에서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의 미지급 소득세액 계산과 소득세 납입은 《국가세무총국 〈지역교차 하여 경영요약한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잠행방법〉배포에 관한 통지》（국세발(2008) 28호）제16조 및《국가세무총국 지역교차 하여 경영요약한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221호)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유관 심사, 비안수속은 총기구 주관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2) 총기구를 서부대개발 세수혜택지역 이외 지역에 설치한 기업은 혜택지역 내에 설립한 분지기구(혜택지역 내 설립한 3급 이하 분지기구는 불포함)가 해당 분지기구 소득에 대해서 15%혜택세율 적용을 확정한다. 해당 분지기구가 혜택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확정될 때, 해당 분지기구의 주요사업이 《서부지역 장려유형 산업목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주요사업 수입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한다. 해당기업이 미지급 소득세액의 계산과 소득세 납입은 국세발(2008) 221호 제2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유관 심사, 비안수속은 분지기구 주관세무기관에 신청하여 처리한다. 분지기구 주관세무기관은 해당 분지기구가 서부대개발 세수혜택을 받은 상황을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본 공고는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2012년 4월 6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深入实施西部大开发战略有关企业****所得税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12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 海关总署关于深入实施西部大开发战略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1〕58号）的规定，现将深入实施西部大开发战略有关企业所得税问题公告如下：　　一、自2011年1月1日至2020年12月31日，对设在西部地区以《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中规定的产业项目为主营业务，且其当年度主营业务收入占企业收入总额70％以上的企业，经企业申请，主管税务机关审核确认后，可减按15％税率缴纳企业所得税。　　上述所称收入总额，是指《企业所得税法》第六条规定的收入总额。　　二、企业应当在年度汇算清缴前向主管税务机关提出书面申请并附送相关资料。第一年须报主管税务机关审核确认，第二年及以后年度实行备案管理。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税务机关可结合本地实际制定具体审核、备案管理办法，并报国家税务总局（所得税司）备案。　　凡对企业主营业务是否属于《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难以界定的，税务机关应要求企业提供省级（含副省级）政府有关行政主管部门或其授权的下一级行政主管部门出具的证明文件。　　企业主营业务属于《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范围的，经主管税务机关确认，可按照15％税率预缴企业所得税。年度汇算清缴时，其当年度主营业务收入占企业总收入的比例达不到规定标准的，应按税法规定的税率计算申报并进行汇算清缴。　　三、在《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公布前，企业符合《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05年版）》、《产业结构调整指导目录（2011年版）》、《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07年修订）》和《中西部地区优势产业目录（2008年修订）》范围的，经税务机关确认后，其企业所得税可按照15％税率缴纳。《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公布后，已按15%税率进行企业所得税汇算清缴的企业，若不符合本公告第一条规定的条件，可在履行相关程序后，按税法规定的适用税率重新计算申报。　　四、2010年12月31日前新办的交通、电力、水利、邮政、广播电视企业，凡已经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落实西部大开发有关税收政策具体实施意见的通知》（国税发〔2002〕47号）第二条第二款规定，取得税务机关审核批准的，其享受的企业所得税“两免三减半”优惠可以继续享受到期满为止；凡符合享受原西部大开发税收优惠规定条件，但由于尚未取得收入或尚未进入获利年度等原因，2010年12月31日前尚未按照国税发〔2002〕47号第二条规定完成税务机关审核确认手续的，可按照本公告的规定，履行相关手续后享受原税收优惠。　　五、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执行企业所得税优惠政策若干问题的通知》（财税〔2009〕69号）第一条及第二条的规定，企业既符合西部大开发15%优惠税率条件，又符合《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和国务院规定的各项税收优惠条件的，可以同时享受。在涉及定期减免税的减半期内，可以按照企业适用税率计算的应纳税额减半征税。　　六、在优惠地区内外分别设有机构的企业享受西部大开发优惠税率问题　　（一）总机构设在西部大开发税收优惠地区的企业,仅就设在优惠地区的总机构和分支机构（不含优惠地区外设立的二级分支机构在优惠地区内设立的三级以下分支机构）的所得确定适用15%优惠税率。在确定该企业是否符合优惠条件时，以该企业设在优惠地区的总机构和分支机构的主营业务是否符合《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及其主营业务收入占其收入总额的比重加以确定，不考虑该企业设在优惠地区以外分支机构的因素。该企业应纳所得税额的计算和所得税缴纳，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的通知》（国税发〔2008〕28号）第十六条和《国家税务总局关于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若干问题的通知》（国税函〔2009〕221号）第二条的规定执行。有关审核、备案手续向总机构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　　（二）总机构设在西部大开发税收优惠地区外的企业，其在优惠地区内设立的分支机构（不含仅在优惠地区内设立的三级以下分支机构），仅就该分支机构所得确定适用15％优惠税率。在确定该分支机构是否符合优惠条件时，仅以该分支机构的主营业务是否符合《西部地区鼓励类产业目录》及其主营业务收入占其收入总额的比重加以确定。该企业应纳所得税额的计算和所得税缴纳，按照国税发〔2008〕28号第十六条和国税函〔2009〕221号第二条的规定执行。有关审核、备案手续向分支机构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分支机构主管税务机关需将该分支机构享受西部大开发税收优惠情况及时函告总机构所在地主管税务机关。七、本公告自2011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国家税务总局二○一二年四月六日 |